

1. 의의

세법은 공법임에도 민법 등 사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세법과 사법이 많은 경우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아파트를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아파트 매매행위 자체는 사법인 민법에서 규율하고, 그러한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문제는 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다.

또한 재화(상품, 제품)의 판매행위를 하고 나서야 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과 민법 등 사업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유는 세법에 의한 세금부과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그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대부분 민법 등 사법상의 거래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2. 법의 해석과 관련한 차이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등 사법은 일반적이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 법규의 해석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양자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기 위해 문언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또는 축소해석 등 논리적 해결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따라 엄격해석 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법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독창적 조항을 설정하여 흠결된 영역에 유추적용을 한다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민법과 세법의 가치체계

민법은 경제적 거래행위에 대하여 실체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한 **적정한 법률행위의 형식** (매매, 임대차)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그 거래행위에 관계된 개인간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에 **세법**은 공평한 조세부과를 위하여 민법 등 사법상 법률행위 방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착하여야 한다.

가령,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증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증여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으로서의 증여(계약)**가 아니라 **세법에서는 타인의 경제적 희생하에 무상으로 다른 타인의 경제적 수익을 하는 것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규정된 증여의 경제적 실질**이 되는 것이다.

4. 민법상 채권과 조세채권의 차이

가. 성립과정

민법상 채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인 계약에 의하여 채무관계가 주로 성립한다.

조세채무는 법정채무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나. 확정과정

민법상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법률행위 성립시)에
권리의무관계(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다.

조세채무는 납세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처분행위(결정,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4. 민법상 채권과 조세채권의 차이

다. 집행과정

민법 등 사법관계에서는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내지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채권을 실현하여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조세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그 실현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조세채권자인 징세관서가 그의 자력에 의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조세채권의 급부내용을 실현한다. 이것이 조세징수의 자력집행이다.

라. 채권의 효력

민사상 채무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세채권은 조세의 공익성과 공평하고 확실한 징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채권, 공과금 등 기타 채권에 비하여 우선징수할 수 있는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4. 민법상 채권과 조세채권의 차이

마. 기타의 차이점

조세법률관계는 채권자인 국가에 결정, 경정 등 을 통하여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권한 결정, 결정의 보조수단으로 질문, 검사권 등 사법상의 채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여러가지 특권을 부여 하고 있다.

제1강 민법과 세법의 관계

5.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용 방법

가. 의의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비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이 적용되는 사실관계는 법률적 행위 또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법 관계에서 법의 흠결이나, 공백이 있는 경우 법 스스로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관련 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을 인정해야 할 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차용개념과 관련된 문제이다.

5.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용 방법

나.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1) 차용개념의 의의

세법에서는 민법 등 사법에서 사용하는 개념,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보증, 담보, 상속, 배당 등이 이에 해당됨

이러한 현상을 세법에서는 사법개념의 차용이라 하고,

이와 같이 세법에서 차용하고 있는 개념을 차용개념이라고 한다.

5.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용 방법

나.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2) 차용개념의 해석

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차용개념을 민법 등 사법에서의 의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용개념은 세법에서도 사법의 의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령,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그러하다.

(단, 이 경우에는 민법상의 매매의 개념을 수정하여 규정한 경우에 해당)

문제는 세법 자체에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경우 사법의 정립된 뜻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세법 고유의 의미내용을 부여하여 해석할 것인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제1강 민법과 세법의 관계

5.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용 방법

나.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2)차용개념의 해석(3가지 견해가 있음)

(가)독립설

법 분야마다 지배하는 법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 또는 용어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재정수요의 충족, 조세공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 세법의 특성에 따르는 세법 독자의 견지에서 그 용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1강 민법과 세법의 관계

5.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

용

나.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2)차용개념의 해석

(나)통일설

법질서의 일체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초로 하여 차용개념은 원칙적으로 사법에서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0.4.29.선고, 2007두11092 판결).라고 하여 통일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강 민법과 세법의 관계

5.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

용다.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2)차용개념의 해석

(다)목적적합설

세법에 있어서도 목적론적 해석이 타당하여야 하고, 차용개념의 의의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목적과 관련 아래에서 탐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한계가 모호하여 각 범위가 명백하지 못하고,

법률개념으로서의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한 용어나 법문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목적론적 해석
(입법취지 또는 정책목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라)결론

판례와 학설은 대체적으로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차용개념의 해석은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1강 민법과 세법의 관계

5.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용

나.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3)고유개념

고유개념이란 과세표준, 필요경비, 원천징수 등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고 세법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미내용을 법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독자적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다. 사법상 법률관계의 존중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도 여러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